

◎농촌진흥청공고 제2023-321호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06일

농촌진흥청장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,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9491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(안 제6조)

- 1) 치유농업사 2차 시험방식을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간소화함(안 제6조제2항).
- 2)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 기준을 '횟수'로 설정함(안 제6조제4항)
- 3)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에서 2급 치유농업사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의 미비점을 보완함(별표1)
- 4)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7항 신설)

나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1)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(안 제11조 신설)
- 2)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권한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함(안 제12조제2항)
- 3)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54875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,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

- 전자우편 : 007zero@korea.kr

- 팩스 : (063) 238-1762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(전화 (063) 238-0453~0454, 팩스 (063) 238-17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